

2016.07.19

##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에서는 그 동안 수출입기업의 손톱 밑 가시로 여겨졌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한-중 FTA 등 특혜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

#### 1. 원산지 검증절차 완화

-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현지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원산지 조사 소요 기간이 약 3개월 단축**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및 원산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한-EU, 터키, EFTA 협정 상 불필요한 수입자 조사를 생략** 함으로써 수입자의 조사 부담 경감

2016.07.19

## 주요내용

### 2. 협정관세 적용물품 가산세 부과 및 경감

#### • 가산세 가중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위/변조하는 경우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 • 가산세 감면

- 원산지증명서 오류를 통보받고 원산지조사통지이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한내에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기간 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 납세 담보 제공 시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부담 완화

- **담보금액**: 협정관세 미적용 시 추가 납부할 세액 상당액 (내국세 등 포함)
- **담보해제사유**: 원산지 조사대상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확인

2016.07.19

## 주요내용

### 4.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

- 2016년 7월이후 발급되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서**는 **HS 4단위를 기준**(기존 HS 6단위)  
- 다만, 실제 적용되는 품목은 신청한 HS 6단위 품목에 한정됨을 유의

### 5. 각종 FTA규정 관련

-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대**  
- 역내 부가가치 계산 시 기존 '공제법' 외에 '**직접법**' 선택 적용 가능
-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으로 전환**  
- 기존에는 기관발급이 원칙이고 자율발급이 예외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였으나, 2016년 8월 이후부터 **자율발급이 원칙적인 발급방식**으로 변경
- **한-콜롬비아 FTA 발효**  
- 뉴스레터 제 260호 참조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뉴스레터 제 261호 참조

---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

---

2016. 7.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목 차

① 관세청장의 중소기업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확대	1
②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단축	2
③ 수출입물품 원산지조사 소요기간 단축	3
④ 대미 섬유수출품 원산지조사 절차 명확화	4
⑤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부담 완화	5
⑥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6
⑦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근거 신설	7
⑧ 협정관세 적용물품 가산세 부과 및 경감 근거 신설	8
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	9
⑩ FTA특례법 의무조항 위반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10
⑪ 원산지조사 대상자 조력 받을 권리 확대	11
⑫ 한-중 FTA 전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신설	12
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생략	13
⑭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대	14
⑮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에서 자율발급으로 전환	15
⑯ 한-콜롬비아 FTA 발효	16
⑰ 유통이력대상물품 확대 및 신고의무 완화	17
⑱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완화	18
⑲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 개통	19
⑳ 보세공장 장외 작업 반출입 절차 간소화	20
㉑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절차 간소화	21
㉒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22
㉓ 해외 이산화물 정보 통합 제공	23
㉔ 민관협력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 구축	24



# 1 관세청장의 중소기업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확대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p> <p><u>&lt;신 설&gt;</u></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관련 상담·교육</li> <li>○ 원산지증명 전산시스템 개발·보급</li> <li>○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보관방법에 관한 상담·교육</li> <li>○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교육</li> <li>○ 기타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li> </ul>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p> <p>(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 [기대효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FTA 교육 및 상담 사업 확대
  - (지원 확대) 법적근거 신설로 예산 확보 및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FTA 교육·컨설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증가
  -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인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원산지관리사 취업 지원



## 2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단축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기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5년</li> <li>○ (수출자)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li> <li>○ (생산자) 증빙서류 작성일부터 5년</li> </ul>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기간 기산일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중국의 경우는 3년</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 )

- [기대효과]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명확화로 수출자·생산자 부담 완화
  - (한·중) 협정 제3.20조에 따라 자료 보관을 3년으로 단축
  - (자료보관 대상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생산자에 한해 자료보관 의무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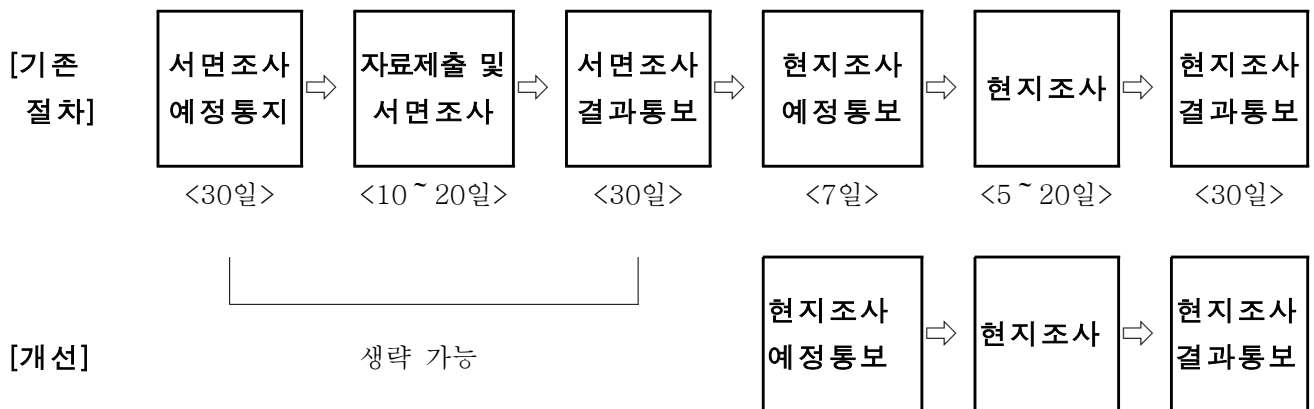
### 3 수출입물품 원산지조사 소요기간 단축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input type="checkbox"/> 서면조사 완료 후 현지조사  ○ 서면조사 의무적 실시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 우선 실시 가능  ○ 조사대상자 특성상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현지조사 가능  <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1조 )

○ [기대효과] 원산지조사 소요기간이 약 3개월 단축

<예시: 국내 원산지조사 절차 변경 흐름도>



#### 4 대미 섬유수출품 원산지조사 절차 명확화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대미 섬유수출품 원산지조사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간: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 완료</li> <li>○ 조사결과통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사본을 미국의 관세당국에 송부</li> <li>* 증빙서류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li> </ul>	<p><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 통지기한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조사결과 통지: 미합중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날부터 <u>12개월 이내</u>에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등 조사결과 통지</li> </ul>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p> <p style="text-align: center;">(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 )</p>

- [기대효과] 대미 섬유수출품에 대한 간접검증(한국세관이 수행)에 있어 수출기업이 원산지조사에 대응(증빙자료 추가확보 및 이의신청기간)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불이익 방지

## 5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부담 완화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확인 요청(간접검증)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 조사 후 원산지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확인 필요시</li> <li>○ 무작위방식으로 표본조사시</li> </ul> <p><u>&lt;신 설&gt;</u></p>	<p><input type="checkbox"/> 수입자 조사를 생략하고 상대국에 원산지확인 요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원산지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확인 필요시</li> </ul>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6조)</p>

- [기대효과] 불필요한 수입자 조사 생략으로 원산지조사 부담 완화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및 원산지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한-EU, 터키, EFTA 협정은 수입자가 원산지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의무적인 수입자 조사 절차가 필요했으나,
  -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자를 조사할 필요 없이 계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수입자의 원산지조사 부담을 경감

## 6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C/O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 대해 교육 실시</li> </u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C/O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li> <li>○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li> </ul>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p> <p>(FTA관세특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p>

-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양식 등의 통일화 및 원산지 증명서 신뢰성 제고로 FTA 활용 촉진에 기여

## 7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근거 신설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사유 <u>&lt;신 설&gt;</u></p>	<p><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보류기간 만료 전일 것</li> <li>○ 수입자의 담보제공 및 담보 해제 요청시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금액: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상당액(내국세등 포함)</li> <li>- 담보해제사유: 원산지 조사대상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담보해제</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p> <p>(FTA관세특례법 제21조,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8조)</p>

- [기대효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부담 완화

## 8 협정관세 적용물품 가산세 부과 및 경감 근거 신설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는 경우</li> <li>○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li> <li>○ 협정관세 적용받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오류를 통보받고 원산지 조사 통지 이전에 수입신고할 때</li> <li>○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한 내에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할 때</li> <li>○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기한 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할 때</li> <li>○ (준용) 관세법 시행령 §39②~⑤</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 (FTA관세특례법 제36조,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li> </ul>

- [기대효과] 가산세 적용 이자율, 가산세 가중 및 감면사유 등을 신설하고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입자의 부담 완화

## 9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원산지인증서 발급기준 <input type="checkbox"/> HS 6단위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원산지인증서 발급기준 <input type="checkbox"/> <u>HS 4단위</u>  <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 (FTA관세특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기대효과] 기존 품목별 원산지인증서 발급기준을 HS '6단위' 기준에서 '4단위' 기준으로 변경하여 업체의 편의 제고(FTA 활용 증대)



## 10 FTA특례법 의무조항 위반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기준</p> <p>○ 세관장이 위반행위의 정도·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1/2 감경 가능</p>	<p><input type="checkbox"/> 과태료 감경기준 명확화 및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완화</p> <p>○ (감경) 감경을 1/2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의2①</li> <li>-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li> <li>-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될 때</li> <li>- 위반행위 정도,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감경 필요가 있을 때</li> </ul> <p>○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완화 (3회이상 위반 → 4회 이상 위반)</p>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p> <p>(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54조, 별표 25)</p>

- [기대효과] 과태료 감경기준 및 최고 상한액 부과까지의 횟수가 증가하여 단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의 부담을 경감

## 11 원산지조사 대상자 조력 받을 권리 확대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원산지조사 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p> <p>○ 현지조사 대상자</p> <p><u>&lt;신 설&gt;</u></p>	<p><input type="checkbox"/> 원산지 조사대상자 조력받을 권리 확대</p> <p>○ (좌 동)</p> <p>○ 서면조사 대상자</p>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p> <p>(FTA특례법 제17조제8항 신설)</p>

- [기대효과] 전문가의 조력의 범위가 현지조사에서 원산지조사로 확대되어, 서면조사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 확대

## 12 한-중 FTA 전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신설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input type="checkbox"/> 모든 FTA협정에 <u>단일 양식의 협정 관세적용신청서 사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지(협정관세 신청)3</li> <li>○ 을지(수입란별 C/O 정보)</li> </ul> <p><u>&lt;신 설&gt;</u></p>	<input type="checkbox"/>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u>《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사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병지(수입신고-C/O 품목 연계정보) * 관세청 공고 2016-49호</li> </ul> <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

### ○ [기대효과]

- 한-중 세관당국간 C/O별 특혜적용여부 피드백 교환으로 수출자 특혜적용 관리 및 지원 강화
- 모델·규격 단위별 C/O 사용량 등 전산관리 용이

### 13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생략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FTA 신청시 C/O 원본 제출</p> <p>(중국) 모든 FTA 신청시 사전 C/O 원본 제출</p> <p>(한국)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또는 '사후신청'시 C/O 원본 제출</p>	<p><input type="checkbox"/> C/O 원본 제출 전면 생략</p> <p>○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 내 C/O 자료 교환시, 양국 모두 C/O 제출 생략</p>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12월</p>

- [기대효과] 對中 수출시 원산지증명서가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여 발생하는 물류비용 감소 대중 수출촉진 및 아국 수입시 P/L 통관 확대로 신고인 편의제고

## 14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대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역내 부가가치 계산 방식 <u>‘공제법’ 일괄 적용</u></p> <p>○ 부가가치 계산 방법 : 공제법</p> <p><u>&lt;신 설&gt;</u></p> <p>*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제3호 별표6</p>	<p><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역내 부가가치 계산 방식 <u>‘공제법’, ‘직접법’ 선택 적용</u></p> <p>○ (좌 동)</p> <p>○ ‘직접법’ 선택하여 계산</p> <p>- 다만, <u>동일한 회계연도에는 계산 방식 변경 불가</u></p> <p>* 다만, 한-아세안 FTA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의 발효가 되지 않은 아세안회원국은 공제법만을 적용</p>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ASEAN 국가 중 태국(‘16.1月), 미얀마(‘16.2月), 싱가포르(‘16.4月) 3개국 旣시행 ASEAN 기타 국가는 자국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한국에 통보한 후에 발효 예정</p>

- [기대효과] 부가가치 계산방법 변경으로, 수출자 선택 편의 제고

## 15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에서 자율발급 전환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원칙)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협정 부록 4가-1)  ○ (예외)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협정 부록 4가-2) *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  [협정문 부속서 4가]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수출자 자율방식 (협정 부속서 4나)  ○ (한시적) 현행 원산지증명서 방식 인정 (~ '16. 12월)  <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8. 1. [협정문 제4장, 부속서 4나]

-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C/O) 자율발급에 따른 수출자 편의 증대 및 신속한 C/O 발급

## 16 한-콜롬비아 FTA 발효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input type="checkbox"/> 우리나라 FTA 협정발효 국  ○ <u>14건, 51국</u> - 칠레, 싱가포르, EFTA(4), 아세안(10), EU(28),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u>&lt;신 설&gt;</u>	<input type="checkbox"/> 우리나라 FTA 협정발효 국  ○ <u>15건, 52국으로 확대</u> - (좌 동)  - <u>콜롬비아 추가</u>  <input type="checkbox"/> [발효일] '16. 7. 15.

- [기대효과] 콜롬비아 내수 시장 선점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수출확대 기대

## 17 유통이력대상물품 확대 및 신고의무 완화

(통관기획과 042-481-7815)

현 행	개 선
<p>□ 유통이력대상물품 27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황기, 뱀장어, 냉동고추,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냉동꽂치, 김치, 식염, 식용 천일염</li> </ul> <p>&lt;신 설&gt;</p>	<p>□ 유통이력대상물품 31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지정)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4개 품목 추가</li> <li>*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lt;별표 1&gt;</li> </ul> <p>&lt;참고&gt; 신규지정 11개 품목 중 위 4개 품목은 올해 하반기 우선 시행, 나머지 7개 품목(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은 '17년 시행</p> <p>□ 개인 판매분 일괄신고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묶어서 1건으로 일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완화</li> <li>*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⑦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li> </ul> <p>□ [시행일] '16. 8.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 별표 1.)</p> <p>* 유통이력 고시 개정시 적용</p>

- [기대효과] 국민보건 확보 및 신고의무자 부담 완화



## 18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완화

(특수통관과 042-481-7644)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호박(HS 0709), 파인애플(0804), 멜론·수박(0807) 수입시 <b>현품</b> 원산지 표시</li> <li>○ 의자, 소파(HS 9401) <b>현품</b>에 원산지 표시</li> </ul> <p>*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t;별표2&gt;</p>	<p><input type="checkbox"/>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수박에 대해 <b>최소포장</b> 원산지 표시 허용</li> <li>○ 조립식 의자(DIY 등)는 소매용 <b>최소포장</b>에 원산지표시 허용</li> </ul>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6월 30일</p> <p>(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lt;별표2&gt;)</p>

### ○ [기대효과]

- 조립식 의자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 하기 위한 포장 해체 작업 부담 감소
- 원산지표시 방법 완화로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원활한 물류흐름 기대

## 19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 개통

(특수통관과 042-481-7838)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특송물품 통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장치장) 인천공항, 김포공항의 세관지정장치장에서 특송화물 통관 처리</li> <li>○ (자가통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의 경우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특송화물 통관</li> </ul> <p>* DHL, FEDEX, UPS 등</p>	<p><input type="checkbox"/> 특송물품 집중 통관제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의 투입 및 반출이 전면 자동화라인이 구축된 물류센터에서 모든 특송화물 통관 처리</li> <li>- 단, 관세법 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송업체는 자체시설을 이용한 특송물품 통관 허용</li> </ul>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월 1일</p>

- [기대효과] 신속한 물류처리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민 만족도 증대

## 20 보세공장 장외 작업 반출입 절차 간소화

(수출입물류과 042-481-7823)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장외 작업 반출입 절차</p> <p>○ 보세공장 장외작업 시 장외작업장이 다를 경우 장외작업 별도 장외작업허가 신청</p> <p>* 장외작업허가 신청 시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한 후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장외 작업 반출입 절차 간소화</p> <p>○ 장소가 다른 장외작업장에서 바로 추가 공정이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괄 허가 신청 가능</p> <p>*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다른 장외작업으로 물품 이동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9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22조) * 보세공장 고시 개정시 적용</p>

- [기대효과] 현실에 맞는 개선을 통한 업체 물류비용 절감

## 21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절차 간소화

【세원심사과 042-481-7643(사후관리), 7872(담보)】

현 행	개 선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 분납세액 납부 완료 시 업체의 ‘사후관리 종결 신청’ 또는 세관의 ‘수작업 종결’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 분납세액 납부 완료 시 <u>사후관리 자동 종결</u> ※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물품 담보 해제 ○ 분납세액 납부 완료 후 업체의 담보해제 신청 시 담보 해제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물품 담보 해제 ○ 분납세액 납부 완료 시 <u>제공된 담보 자동 해제</u> ※ 담보관리시스템 개선 <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12월

- [기대효과]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 22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심사정책과 042-481-7754)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p> <p>○ 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납부후 세무서에서 정산</p> <p><u>&lt;신 설&gt;</u></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일부 업체에 대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p> <p>○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제조기업</p> <p>*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p> <p>○ 적용방법: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 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신고시 정산*</p> <p>* 납부유예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p>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7. 1.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신설)</p>

- [기대효과]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지원

## 23 해외 이사회물 정보 통합 제공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716)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해외 이사회물 정보 이용 불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 중심 정보 제공으로 국민 이용에 불편</li> <li>○ 특히, 해외 이사회물 차량 반입 관련 정보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 제공 중*</li> </ul> <p>* (수입통관) 관세청 → (차량검사) 교통안전공단 → (환경인증) 한국환경공단 → (차량등록) 차량등록사업소</p>	<p><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상 해외이사회물 정보 통합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이사회물 정보를 사용자 중심으로 맞춤형 제공</li> <li>○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이사회물 차량의 수입통관에서 검사·등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합, 사전 안내</li> </ul>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10월</p> <p>* 전자통관시스템 개선</p>

- [기대효과] 정보의 통합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 24 민관협력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 구축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716)

현 행	개 선
<p><input type="checkbox"/> 무역금융 사기대출 위험 지속</p> <p><u>&lt;신 설&gt;</u></p> <p>* 금융기관의 실물통관흐름에 대한 전문성 부재 및 물품가격 정보부족으로 허위 수출 및 가격조작 여부 파악이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무역금융 사기대출예방을 위한 실시간 정보 제공</p> <p>○ 무역금융 대출신청건과 관련된 수출품목의 정상적인 수출가격* 실시간 제공</p> <p>* 정보공유 MOU체결 : 수출입은행('15.6月), 무역보험공사('15.6月), 은행연합회('16.3月)</p> <p>* 과거 통관자료를 분석하여 HS 10단위 품목별 평균가격 범위 제공</p> <p>○ 대출 심사시 은행 자체전산망에서 수출이행(선적)내역이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연계시스템 구축</p>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16. 6월</p>

- [기대효과]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무역금융사기대출을 사전차단 하여 매년 수천억 상당의 공공재원 누수 예방 효과 기대